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궁금하다면?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

사장님, 직원 복지가 고민이세요?
28만 근로자와 3만 개의 기업이 선택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들어봤어?
정부와 회사가
내 휴가비를
챙겨주는 사업이 있대!

국내 휴가비 50% 지원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고
휴가 떠나요!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Tip

1. 장기휴가 사용 적극 운영(1년에 2회 이상)
- 하계휴가 외에도 연말 휴가 등 권장
2. 근로자 개인별로 매월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토록 운영
3.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권장
4. 징검다리 연휴 중간에 연차 사용 권장
5.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극 이용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 총 10만명 모집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모집기간

3.2(수) ~ 10만명 모집 완료 시까지
※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40만원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국내 여행경비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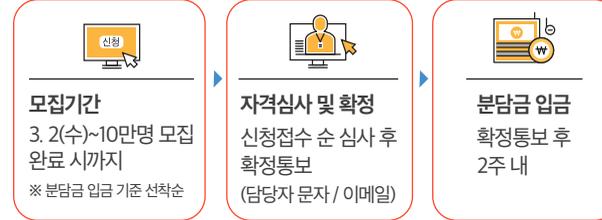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참여신청은 이렇게 해주세요!

- 참여신청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온라인(PC) 신청
→ vacation.visitkorea.or.kr

● 참여기업 모집일정



● 필수 제출서류

- 중 소 기 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소 상 공 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 중 견 기 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 사 회 복 지 시 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사 회 복 지 법 인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비 영 리 민 간 단 체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 료 법 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노 동 조 합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 비 영 리 법 인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등록증
- 사 회 적 협 동 조 합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설립신고증

●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 정부포상, 언론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우수 참여기업
혜택
- * 참여기업 혜택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연차 휴가

안타깝게 쓰기



알차게 연차휴가 쓰기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 연차유급 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거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 할까요?

- 01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 02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 변경 가능(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기를 변경하여 반드시 휴가 부여)
 - 연차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 01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
 - 사용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먼저 사용
 -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
- 02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연차사용 및 미사용 수당 청구 예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제도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언제?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①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어떻게?	①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회계연도(1.1. ~ 12.31.) 단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7월 1~10일 사이에 ①-②를 이행	예시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0월 1~10일 사이에 ①-②를 이행
근로자 ↓ 사용자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	언제?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어떻게?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남은 연차가 5일이고, 7월 5일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다면 → 7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5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예시	남은 연차가 5일이고, 10월 5일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다면 → 10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5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언제?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어떻게?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남은 연차가 5일인데 1차 촉진 시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 사용자는 10월 말까지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예시	남은 연차가 5일인데 1차 촉진 시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 사용자는 11월 말까지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 사용촉진에서 사용자가 1차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의 경우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노무서류 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다279283).